

I. M. O 제35차 복원성, 만재홀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참석 보고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기술원나형진

1. 회의일반사항

- 회의명 : 제35차 복원성, 만재홀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 기 간 : 1991. 2. 4(월) ~ 1991. 2. 8(금)
- 장 소 :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영국런던)
- 참가현황
 - 회원국 : 39개국, 127명
 - 준회원국 : 1개국, 3명
 - UN 대표기구 : 1개기구, 1명
 - 정부간 기구 : 1개기구, 1명
 - 비정부간 기구 : 4개 기구, 11명
 - 사무국 : 7명

2. 작업반별 주요업무 및 회의의제

- 1) 작업반별 주요업무
 - ① 비손상 복원성 특별 작업반
 - 모든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 코드를 종합
 - OPEN - TOP 콘테이너선의 건현, 톤 수축정 및 감항성 보장을 위한 모형 선 시험의 조건 결정
 - ② 구획 및 손상복원성 특별 작업반
 - 199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발효되는 "길이 100m 이상의 ro-ro ship을 포함한 전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규칙"의 주해서 작성

- SOLAS '90 Standard를 현존 ro-ro ferry에 적용하는 문제
- ③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 특별 작업반
- 토레모리노스 협약의 조속 발효를 위한 규칙의 개정문제

3. 회의일정 및 의제

일시	회의의제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의제 채택
월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M. O 타기구 결정사항 ○ 어구에 의한 외력과 관련된 조업 형태 ○ 구획 및 손상복원성 (* 제1작업반) ○ 비손상 복원성 (* 제2작업반)
화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 (* 제3작업반) ○ 1966 LL 협약 기술규칙의 개발 ○ OPEN TOP 콘테이너선 ○ 손상카드의 수집 및 분석
수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적 지시선을 위한 안전코드의 복원성 요건에 관한 개정 (resolution A. 373 (X)) ○ MODU의 비손상 복원성 및 손상 복원성 대체방안의 개정 ○ 대형선의 선체균열 ○ 동물 운반선

일시	회의의제
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 SIDE TANK의 역지변 장치 ○ 해난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역할 ○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경감에 있어서 IMO규칙의 적합여부 검
목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 1992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작업계획
금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위원회에의 보고

4. 어선관련분야 주요 토의내용 및 결과

1) 어구에 의한 외력(의제6)

- 지난 제34회기시 소련, 중국, 폴란드가 제출한 문서(SLF 34/4, SLF 34/4/corr. 1, SLF 33/INF. 17, SLF 33/INF. 26)를 비손상 복원성 특별작업반에서 검토하고 draft intact stability code (SLF 35/3/1, ANNEX. 1)의 4.2.2.5에 다음과 같은 guidance 를 설정하기로 함.

“전복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으로 특히 power block으로 어구를 끌어올릴 때나 trawl시 해저 장애물이 걸려있을 경우와 같이 어구에 의해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1977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의제9)

① 의정서의 조문초안(SLF 35/9/5, ANNEX. 2)

- 특별작업반 중간회의에서 작성된 의정서 조문초안을 검토하고 조문 10(1)의 ()안의 수치를 15,000에서 14,000으로 수정하고 footnote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

“수치는 24m이상의 세계어선 선복량의 약 50%에서 일치하도록 하고 최종 수치는 회의에서 결정한다.

또, 행정 또는 법률 전문가가 참석치 않은 관계로 세부검토는 차기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② 검사와 증서의 요구사항(규칙 6-11)

- 토레모리노스 협약에 HSSC(검사와 증서의 조화제도)를 도입치 않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현존선에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증서의 양식은 HSSC에 따르도록 동의하고 사무국에 초안을 작성토록 요청함.

③ 선수높이

- 아국대표가 지적한 1977 토레모리노스 협약 recommendation 5, attachment 3의 선수높이 요구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1966 LL, 규칙 39 및 Poland 제안을 intact stability working group에 검토하도록 요청함.

④ 구명설비에 대한 제7장의 개정제안(SLF 35/9/4)

- 국제구명설비 제작자협회(ILAMA)에서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LSR 소위원회의 검토후 재검토키로 함.

⑤ 어업실습선

- 아국대표가 어업실습선의 1977 SFV 적용여부에 관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정서 조문 3.2.3.항에 따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⑥ 1977 SFV 협약 권리사항에 관한 개정

- attachment 3에 있는 권리사항을 검토하고 각 소위원회 및 특별작업반의 작업결과에 따라 수정하기로 함.

⑦ 회의의 배정

- 1992년 ~ 1993년 2년간 중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MSC에 승인을 요청함.

5. 차기(제36차 SLF)회의 특별 작업반 업무

1) 차기회의 의장 및 부의장

의장 : Mr. H. Hormann (Germany)

부의장 : prof. L. Kobylinski (Poland)

2) 특별작업반 업무

○ 각 정부가 제출한 지적을 토대로 조문

초안에 관한 검토

- 개정규칙의 문서에 대한 필요한 조정과 ANNEX의 수정초안 검토
- 규칙 25, 40 및 제8장을 포함한 1977 SFV 협약의 규칙수정을 위한 각 제안의 검토
- 회의 결의 초안의 준비
- 주석 및 권고에 관한 검토
- 회의배치 및 일정

6. 아국대표단 활동사항

아국대표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제35차 SLF 소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다시 특별작업반 (비손상 복원성, 구획, 손상 복원성 및 1977 SFV 협약 의정서 개발)에 나누어서 참석하여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1977 SFV 협약 의정서 개발을 위한 특별작업반에 참석, 선수높이, 어업실습선 등 아국이 발언한 내용을 설명, 검토하도록 하였음.

수산물은 맛도 일등, 영양도 일등!!

수산물은 계절, 기호, 장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선택해 먹을 수 있어 식탁의 미각을 북돋아 줍니다.